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18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민홍철·박성준·유동수

안규백 · 이성만 · 서영교

전혜숙 · 권칠승 · 황운하

이상직 · 이상헌 · 송재호

김영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이후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입영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영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때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병무청 전담의사가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입영신체검사는 해당 입영부대의 군의관이 맡고 있어 같은 사람에 대하여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음. 특히, 입영신체검사의 경우 의료시설 또는 장비 부족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한사람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어 큰 피해를받고 있음.

이에 입영신체검사를 폐지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

전에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17조·제56조제1항 삭제 및 제79조제1항제1호·제87조제1항·제3항).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및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재병역판정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재병역판정검사"를 각각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로, "재병역판정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입영판정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입영신체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
	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
	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
	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이하 "입영판
	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여
	<u>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
	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
	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
	<u>다.</u>
	③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
	람에 대하여는 제12조 및 제14
	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 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및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

- 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수 있다.
-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

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 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 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신체검 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 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 | <삭 제> 사교육소집된 보충역과 승선근 무예비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 가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군 사교육소집"으로, "현역 복무" 는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 역 복무"로 본다.

②・③ (생략)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저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 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 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 · 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 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세79	조(여	겨비	등의	국고	부담)	1	_
							·
	사,	입영	판정	검사,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 2. ~ 4. (생략)
- ② ~ ④ (생 략)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
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
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
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
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
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삭 제
-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u>재병</u>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u>재병역판정검사</u>,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u>재병역판정검</u>
사, 입영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
사, 입영판정검사
<u></u>
•
ી મો
③ <u>재병</u>
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
사 통지서
<u>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u>
<u>정검사,</u>
<u>.</u>